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2. 01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. 11. 17. 남해석 의원 외 8명
- 나. 회부일 : 2023. 11. 20.
- 다. 상정일자: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(2023. 12. 01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■ 제안설명자 : 차해영 의원

#### 가. 제안이유

어린이 경증 환자에게 야간과 휴일에 외래진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긴급한 어린이 환자의 진료와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등 원활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됨.

## 3. 검토의견 [신준호 전문위원]

#### 가. 조례 제정 배경

- 야간시간이나 공휴일 등 의원급 어린이병원이 휴업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소아 경증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낮추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‘달빛어린이병원’을 운영 중에 있음에도,
- 마포구에는 ‘달빛어린이병원’이 운영 되고 있지 않고 소아과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‘공공심야어린이병원’을 별도로 지정하여 소아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되었음.

## 나. 주요 조문 설명

- 본 제정조례안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7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안 제2조에서는 ‘공공심야 어린이병원’에 대해 정의하였음.
- 안 제3조는 ‘공공심야 어린이병원’의 지정을 위한 근거와 이에 필요한 기준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4조는 ‘공공심야 어린이병원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.
- 안 제5조는 ‘공공심야 어린이병원’ 지정에 따른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## 다. 종합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가정의 맞벌이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야간과 주말 등 응급 취약시간대에 아이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다양한 감염병으로 인해 소아 진료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,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와 대형 병원조차도 소아 입원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
- 이에 중증 및 응급 상황에서 소아 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야간 및 주말 시간에 소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가정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‘달빛어린이병원’ 제도를 지역사회 현지성과 접근성이 높은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.
- 현재 제정조례보다 선행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사무로서 ‘달빛어린이병원’ 제도를 시행하고 서울특별시에서는 「서울특별시 공공야간·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에 따라 ‘우리아이안심의원’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.

- 보건복지부 ‘달빛어린이병원’ 사업과 서울시 ‘우리아이안심의원’ 사업의 지원 의료기관은 서울에 각각 8개소가 있으며 마포구는 운영되는 곳이 없음.
-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지원하여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영·유아가 감소 추세에 있고 진료시간이 장시간이며 공공지원금과 의료수가가 낮아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.
- 하지만, 관내 현황을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 및 가정의학과 18개소 중 평일 20시 이후와 일요일 진료 의료기관이 각각 12개소가 있고 평일 20시 이후와 일요일 동시 진료 의료기관도 6개소가 있음.
- 관내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 지원 신청 없이 자율적으로 야간 및 공휴일 진료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.
- 따라서, 예산투입 등의 지원은 타 지방자치단체(강남구, 중구) 등의 사례를 볼 때 진료건수 및 범위에 따라 차이가 다소 있으나 예산소요가 연간 2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원 사례를 통한 체계적인 방안 탐색과 장기적인 ‘비용편익분석’을 검토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겠음.
- 다만, 소아 경증 질환자의 응급실 방문을 최소화하여 과밀화 현상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응급의료 비용의 발생을 낮춰서 구민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정책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됨.

## [관 계 법령]

### 「보건의료기본법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(財源)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~ ③ 생략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판결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